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김광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4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20.

발의자 : 김광수 · 주승용 · 강창일

윤영일 · 정인화 · 김해영

최경환(국) · 신용현 · 김삼화

김종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·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,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5조 및 제36조 등).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37조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백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